

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(2019. 9. 1 시행)

제48조(논문제출자격)

-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.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.

대학원 학칙(2020. 9. 1 시행)

제33조(논문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2.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3.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

제34조(학위자격 시험)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, 외국어시험, 전공시험,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, 학위자격 시험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